

【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수】

-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는 항상 국제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-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요건은
 - 제네바 조약 가맹국의 국제운전면허증
 - 제네바 조약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을 갖춰 있는 것
 - 당국 또는 권한을 주어진 단체가 발급한 것
 - 발급날부터 1년이내



- 입니다.
- 상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
 -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
 - 일본에 상륙한지 1년이내이 두개의 조건을 채우는 기간입니다.
 - 일본에 상륙한 외국인이 주민등록한 후, 일본에서 출국하고 3개월 이상 외국에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행받고 그 후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발급날부터 1년간과 재입국 (상륙) 부터 1년간의 양쪽을 채우는 기간이 일본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한 기간입니다.
 - 상기 체류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후쿠시마 운전면허 센터 024-591-4372 또는 4381
 - 코오리야마 운전면허 센터 024-961-2100

【외국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변경】

- 외국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후쿠시마 운전면허 센터 024-591-4372 또는 4381
 - 코오리야마 운전면허 센터 024-961-2100

【자동차 운전자】

-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는 항상 국제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- '일시정지 (STOP)' 의 도로표지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주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.
-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앞쪽에서 속도를 낮추고 교차로 바로 안쪽을 서행해야 합니다.
-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.
- 음주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마세요.
-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한 후에는 되도록 운전하지 마세요.
- 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 벨트를 꼭 매야 합니다. 동승자가 안전 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운전수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모든 좌속에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.



【교통사고의 경우】

- 만약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교통 사고의 관계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상자를 구조해야 합니다.
- 어떤 교통사고라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관한 차량등의 운전수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해야합니다.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신고 (경찰서 전화번호) : 1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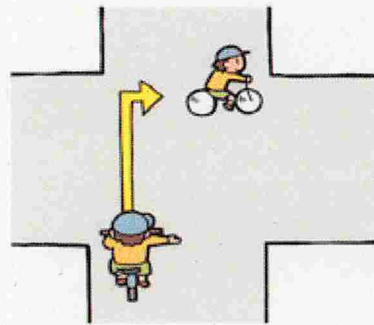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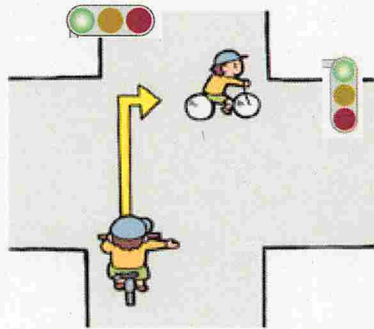


【보행자·자전거 운전자】

- 보행자는 반드시 보도를 통행해야 합니다.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 쪽을 통행해야 합니다. 자전거는 도로의 왼 쪽을 통행해야 합니다.
-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(자전거 통행 가능) 의 도로표지가 설치돼 있는보도에서는 자전거는 보도의 차도쪽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.
- 「일시정지 (STOP)」 의 도로표지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행해야 합니다.



-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 또는 교차하는 도로가 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, 자전거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 앞쪽 신호가 파란 불이 된 후에 건너야 합니다.
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길가에 따라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.



- 보행자는 「보행자 전용 신호」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.



【韓国語】

각종 교통표지판

	<p>일시정지</p>
	<p>최고속도</p>
	<p>주차금지</p>
	<p>주정차금지</p>
	<p>일방통행</p>
	<p>지정방향외 진행금지</p>
	<p>차량진입금지</p>
	<p>앞지르기를 위해 우측부분 차선 침입 통행금지</p>